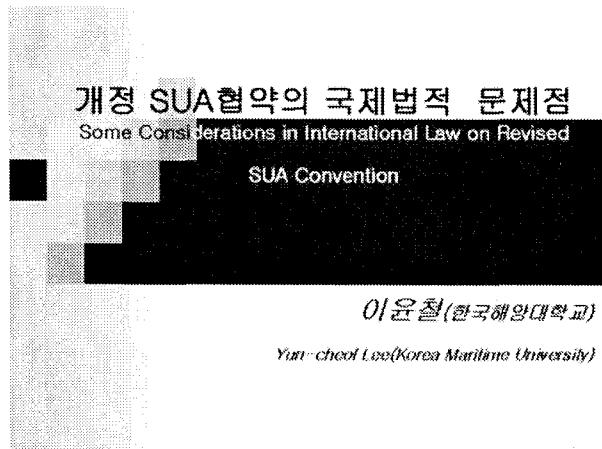


개정 SUA 협약의 국제법적 문제점

이윤철⁺

Some Consideration in International Law on Revised SUA Convention

Yun-Cheol Lee⁺



(3) 개정 SUA 협약의 향후 일정

- 개정 SUA 협약은 플랫폼의정서는 2006. 2. 14부터 1년간 서명을 위해 IMO로부터 개방됨.
- 현 SUA 협약 당사국 중 12개국이 비준 또는 수락서를 거두면 그로부터 90일 후 발효.
- 플랫폼의정서는 3개국의 비준 또는 수락하고 90일 경과 후 발효.

(2) 협의선박에 대한 승선 및 검색

- SUA 협약상 범죄가 있는 선박에 대하여 개정 SUA 협약 당사국의 법집행기관은 승선 및 검색 가능.
- 단, 승선 및 검색을 위해서는 승선 및 검색국기가 협의선박의 기록에 승선 및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기록은 요청을 수락, 거부, 공동검색 또는 기록에 의한 자체검색 등 4가지 조치 중 1개를 취하여야 함.
- 협의당사국은 개정 SUA 협약의 시행 또는 비준, 수락 또는 가입시 차국적선박에 대하여 승선, 검색에 대한 후원적 사전승인을 IMO사무총장에게 통지할 수 있음(opt-in system).

(3) 국제공조체제의 강화 등 협약이행체제 강화

- SUA 협약의 이행을 위한 당사국간 국제공조체제를 강화.
- 국제대리방침자와 해상운송에 대한 치별규정 신설, 공통 및 명인처벌규정 신설 등 협약이행체제 강화.

1. 시작하며

2. SUA 협약의 개정과 향후 일정

(1) 2001. 9. 11 테러와 새로운 테러리즘의 규제에 대한 필요성 대두

- 항공기(예: 9.11테러), 선박, 대량살상무기(WMD)의 테러도구로의 이용 가능성.
- 테러리스트에 대한 처벌과 WMD의 배제(반제거와 바혁선).
- (2) SUA 협약 개정논의 및 채택
- 1988년 해상불법행위협약(SUA) 로마에서 채택.
- 9.11테러 이후 IMO 제84차 LEG에서 SUA 협약 개정논의.
- 초기에는 선박 및 고정식 플랫폼을 이용한 새로운 양상의 대리리즘에 대처하기 위한 개정에 초점.
- 나중에 WMD의 배제를 위한 개정이 추가됨.
- 2005. 10. 14. SUA 협약 개정의정서 채택.

3. 개정 SUA 협약의 주요내용

(1) 새로운 범죄구성요건의 신설

- 현행 SUA 협약상 치별대상 범죄를 확대하여 새로운 범죄(new offences)에 대한 치별규정 신설(제3조 bis), 즉
- 선박을 이용하여 인명설상, 재산파괴 및 이를 야기하는 행위, 폭발물, 폭사성물질, BCN무기 사용하는 행위,
- 선박으로부터 유독물질, 유류, 액화천연가스 등을 방류하는 행위,
- 선박을 이용하여 국제법상 금지된 BCN무기, 원료물질, 특수 분열물질, 특수분열물질의 가공, 사용, 생산을 위하여 설계 또는 준비된 장비, 물자, 이주용도물자 등을 운송하는 행위.

(4) 허락품 의정서의 개정

- 개정된 SUA 협약의 내용은 대체불상 고정식 플랫폼에도 적용.
- 플랫폼을 이용하여 유독물질 등을 방출하는 행위, 플랫폼을 이용하여 BCN이나 액체를 등을 사용하는 행위 등은 모두 허락품의정서에 의하여 치별 가능.

⁺ 이윤철(한국해양대학교)

4. 개정 SUA협약의 국제법적 문제점

(1) 개정주체의 적절성

- 1988년 SUA협약은 IMO해사협약으로 채택 및 개정을 IMO LEG가 주도.
- 2001년 9.11 테러 이후 새로운 양상의 해상테러에 대처하기 위하여 LEG에서 개정논의 시작(2002년).
- 2003년부터 WMD에 관한 비핵신문제가 이슈화되면서 논의주체가 IMO보다는 UN차원의 안보관련기구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절함.
- UN차원에서 대응할 경우 정치적으로 번잡되어 단계이 어려우며, IMO의 전문성과 기술적인 면을 고려하여 IMO에서 개정논의 및 탈피.

(2) WMD 및 관련물질운송의 형사범죄 인정여부

- 국제법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문 국제협약이나 관습국제법에 명시되어야 함.
- 국가책임에 관한 협약조약 제19조(국제법침) : 국제공동체의 기본원칙을 수호하기 위하여 금지·분별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이에 위반하면 중범죄가 된다고 국제관습체 천체가 판단하는 경우로서, 침략행위, 무력에 의한 신민지지령, 노예제도, 심단살해, 인종분리정책, 대가경이나 해양에 대한 대량의 오염행위.
- 개정 SUA협약은 핵화생금지조약(NPT: Non-proliferation Treaty), 화학무기금지협정(CWC: Chemical Weapons Convention), 생물학무기금지협정(BWC: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) 등 종래 비핵신 국제체제와 관련하여 행위자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하여 NPT 등을 국제형사법 규제 함.
- 개정 SUA협약에서 NBC무기관련 물자와 2중용도물자의 단순 운송행위가 기존의 국제법침행행위와 같은 정도의 비난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음.
- 특히, 이를 물자에 대한 단순한 운송행위를 한 개인에게 국제법으로 간주하여 재판 및 처벌을 하여 하는가에 대한 디당선 연구가 요구됨.

(3) 2중용도물자에 대한 정의의 불명확성

- 개정 SUA협약 제3조 b/b(2중용도물자) : BDN무기의 제조, 설계 등에 종대하게 기여하는 물자, 재료, 기술, 소프트웨어 등의 해상운송을 저별가능한 범위로 규정.
- 법정성립요건 : 2중용도물자 등이 BDN무기의 제조 등에 사용될 것이라는 의도를 갖고 2중용도물자 등을 운송.
- “그러한 목적에 사용된다는 의도를 갖고”, “BDN무기의 제조 및 설계 등에 종대하게 기여하는 물자 등”에 대한 개념이 주관적이고, 차례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, 법제석상의 모호성으로 인한 저별구성요건이 분명치 않음.
- 또한 이들 규정의 무리한 법석용으로 인해 해상운송을 담당하는 해운산업과 관련산업을 위축시켜 국제경쟁력 큰 피해를 주고, 특히 해운국인 우리나라에게 더욱 불리함.

(4) 승선 및 경색제도의 유엔해양법협약상 문제점

- 개정 SUA협약은 전면우한관련 국가관항권 이용의 해역(비타적경제수역, 경해)에서 SUA협약상 위반범의 선박에 대해 승선 및 경색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.
- 이는 국제해양법상 공海水 자유의 원칙(UNCLOS 제87조 제1항)과 기국의 비타적관항권(UNCLOS 제94조 제1항)에 정면으로 배치.
- 기국은 선박의 승선 및 경색에 대한 사전승인권을 인정하고 있어서 자국적선에 대한 관할권행사를 할 수 있으나, 포함적 사전승인제도로 인해 여전히 UNCLOS상의 기국의 관한이 해손될 가능성이 있음.
- 청선 및 경색을 한 후 원의가 없을 경우 적절한 보상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지만, 청선 및 경색을 행한 국가의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할 경우 적절한 피해보상이 어려울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.

5. 끝으며

- 새로운 국제법으로서의 해상테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SUA 협약의 개정에 동참.
- 개정 SUA협약 시행으로 IMO A 그룹 이사국으로서 해운경제국인 우리나라 해운산업 위축 예방.
- 개정 SUA협약의 시행 및 비준에 대하여 국내법제도 면밀히 검토, 정비.